경기교육대전환
크게제대로!

2027. 3. 1.자 공립 유·초등교원
시·도간 교류 추진 계획

2026. 9.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

탑재사이트	
G-인사이트 시도교류 매뉴얼	시·도별「시·도간 교류 추진 계획」
NEIS 사용자지원시스템(help.neis.go.kr) -자료광장-사용자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홈페이지 > 중등교육과 > 부서업무방

2027. 3. 1.자 공립 유·초등교원 시·도간 교류 추진 계획 (요약)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주요내용</th></tr>
<tr><td colspan="2">목적</td><td colspan="2">· 벽거교원의 고충해소로 안정적인 교직활동 도모
· 시·도간 교육현장 경험 공유로 지역간 균형 발전 및 협력 증진</td></tr>
<tr><td colspan="2">방법</td><td colspan="2">시·도간 교류인원이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1:1 동수교류</td></tr>
<tr><td colspan="2">대상</td><td colspan="2">타·시도 교육청으로 교류(전출, 교환(파견))를 희망하는 공립 유·초등교원
(특수,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포함, 단, 특수는 국립학교 교원 포함)</td></tr>
<tr><td rowspan="5">내용</td><td>유형</td><td>타시·도 전출</td><td>타시·도 교환(파견)</td></tr>
<tr><td>대상</td><td>경기도 근속경력 3년 이상인 공립 유·초등교원으로 타·시도 전출 희망자
(근속경력에 육아휴직 기간 포함)</td><td>경기도 실근무경력 1년 이상인 공립 유·초등교원으로 타·시도 교환(파견) 근무 희망자</td></tr>
<tr><td>원칙</td><td>1:1 동수 교류</td><td>1:1 동수 교류 (파견기간 2년)</td></tr>
<tr><td>순위 기준</td><td>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자
상이 1급~3급 국가유공자 부양자
②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유족(가족)
③ 부부별거자 ④ 직계존속별거자(부양)
⑤ 일반희망자
(단,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 최우선 순위로 결정 할 수 있음)</td><td>① 지역특성 관련 연구를 수행하려는 자
② 노부모 봉양이 필요한 자
③ 별거부부
④ 기타 희망자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양책임자 우선 교환할 수 있음)
※전남의 경우 희망 시군별 순위 선정</td></tr>
<tr><td colspan="2">※ 순위경합 시 동 순위 내 우선 기준
① 세 자녀 이상 부양자 ② 별거기간이 오래된 자 ③ 별거부부 교육공무원
④ 별거부부 공무원 ⑤ 본도 장기 실근무자 ⑥ 교육총경력 ⑦ 근무성적 ⑧ 생년월일</td></tr>
<tr><td>제출 서류</td><td colspan="2">① 2027.3.1.자 시도교류 신청: G-인사이트
- 개인별 증빙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임용전 경력증명서 등
※ 모든 증빙서류의 발급일자는 도교육청 공문시행일 이후이어야 함
주민등록등(초)본은 주소변동내역 모두 표시해야 함
② 2025.3.1. 타·시도 교환(파견)자 복귀 신청: K-에듀파인
- 제출 서류: 복귀자 명단, 복귀신청서</td></tr>
<tr><td colspan="2" rowspan="2">G-인사이트
서류접수마감</td><td>2026. 10. 20.(화)</td><td>학교 → 교육지원청</td></tr>
<tr><td>2026. 10. 23.(금)</td><td>교육지원청 → 도교육청</td></tr>
<tr><td colspan="2">행정사항</td><td colspan="2">○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과 광주로 구분하여 신청
○ 모든 소속 교원(휴직자, 파견자 포함)에게 반드시 안내
○ 전출과 교환(파견) 중복 내신 불가
○ 타시·도 교환(파견)근무 기간은 2년 1회로 하며 연장 불가
○ 타시·도 전입 관련 내용은 희망 시도의 계획서를 통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함
(희망하는 시도의 전입제한 조건, 도서·벽지 우선 배치 등 개인별 확인이 원칙)
○ 전출 확정된 교원들의 나이스 사용은 2027.2.28. 16:00까지만 가능</td></tr>
</table>

2027. 3. 1.자 공립 유·초등교원 시·도간 교류 추진 계획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

Ⅰ 목적 및 근거

1 목적

○ 별거 교원의 고충해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교직 안정 도모

○ 시·도간 교육 현장 경험 공유로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협력 증진

2 관련근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13조의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

○ 2027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유치원,초등)

○ 2027 시·도간 교원 인사교류 담당자 협의회(2026. 9.)

Ⅱ 방 침

1 **대상** : 타시·도 교육청으로 교류(전출, 교환(파견))를 희망하는 공립 유·초등교원
(특수,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포함, 단, 특수는 국립학교 교원 포함)

2 **방법** : 시·도 교육청 간 교류 인원이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1:1 동수교류
(직위별, 직급별, 동일자격별) 원칙 단, 교환(파견)전남의 경우 희망 시군별 선정

3 **시행** : 2027.3.1.자 (연1회)

Ⅲ 시 · 도간 전출·전입

1 타시 · 도 전출

1 대상

○ 2027.2.28.기준 경기도 공립학교 **근속경력이 3년 이상인 경기도 교육청 소속 공립 유·초등교원**(특수,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포함)으로 타시·도 교육청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자

2 원칙

○ **동수교류** : 시·도교육청간 전출·입 희망인원이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직급별, 동일자격 소지자 간 1대1 동수 교류

○ **1개 시·도 내신만 가능**

○ **전출과 교환(파견) 중복 내신 불가** ※「2018.3.1.자 시·도간 교류 추진계획」에 예고

《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제19조》

① 본도와 타시·도간 교원의 전보는 해당 교원의 직위·직급간(동일 자격증소지자) 1 : 1 동수로 교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도 교육 및 교원 수급상 필요할 때에는 시·도 교육감 간 합의에 의하여 일방 교류를 시행할 수 있다.

⑤ 타시·도 전출 희망내신은 **본도 공립학교 근속경력 3년 미만인 자**와 임용 당시 일정기간 타시·도 전출 불가규정 적용대상자는 내신할 수 없다. 다만,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⑥ **근속경력 산정**시 계약제 교사 경력, 휴직기간(단, **육아휴직은 근속경력에는 포함**하나 별거기간, 실근무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음), 군경력, 타시·도 교환 근무경력은 제외하며, 경력산출은 2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전출 순위명부 작성 기준

1) 전출 순위

순위	전출 대상	전출 요건
1순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자, 상이 1급~3급 국가유공자 부양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1대에 한함, 비속은 미혼자녀에 한함) 또는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전출 희망 시·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이 실질적 부양자로 인정되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1대에 한함, 비속은 미혼자녀에 한함) 또는 배우자가 상이 1급~3급 국가유공자이고 전출 희망 시·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이 실질적 부양자로 인정되는 경우
2순위	독립유공자 유족(가족), 국가유공자 유족(가족)	• **배우자가 전출 희망 시·도에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자 중**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서류의 '확인 대상자'란에 본인 이름으로 제출이 가능한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서류의 '확인 대상자'란에 본인 이름으로 제출이 가능한 자
3순위	부부 별거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배우자가 전출 희망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배우자가 전출 희망 시·도에 재직 중인 자
4순위	직계존속 별거자(부양)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전출 희망 시·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이 실질적 부양자로 인정되는 경우
5순위	일반희망자	• 1, 2, 3, 4 순위를 제외한 일반희망자
유의 사항		※ **서울특별시 내신자는 별거기간 미인정** - [**미인정**] **3순위(부부별거자), 4순위(직계존속 별거자)** - [인 정] 1순위, 2순위, 5순위만 인정 ※ 위 순위기준에도 불구하고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는 최우선 순위로 결정할 수 있음 - 이전 공공기관 주소지와 전출 희망지역이 동일한 경우 인정 - 발령사항이 나타나는 경력증명서 또는 이전공공기관 직원확인서 ※ 부부교사가 동일 시·도로 동시에 전출을 희망할 경우 부부 중 고순위자 다음 순으로 배우자 순위명부 작성 ※ 희망 시·도 거주여부는 주민등록상 등재 주소로 확인 ※ 희망 시·도 재직여부는 재직(경력)증명서 주소로 확인

2) 동 순위 내 우선 기준 : 전출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순	전출 대상	전출 요건
1	**세 자녀 이상 부양자**	• 세 자녀 이상을 둔 자로서, **18세 이하(2008.3.2.이후 출생)**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자
2	**별거기간이 오래된 자**	• 부부, 직계존속 별거기간이 오래된 자 (3순위, 4순위 신청자에 각각 한함)
3	**별거부부 교육공무원**	• 별거부부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사립교원 포함)** (배우자가 전출 희망 시·도에 거주하고 있거나 재직 중인 경우)
4	**별거부부 공무원**	• 별거부부 공무원 (배우자가 전출 희망 시·도에 거주하고 있거나 재직 중인 경우)
5	**본도 장기 실근무자**	• 경기도 공립학교 근무 경력이 많은 자 - 임용전경력, 휴직기간, 타시도교환, 파견 등 학교외 근무 경력 제외
6	**교육총경력**	• 교육총경력(정규교원 근무경력)이 많은 자 - 계약제, 임용전 군경력, 휴직기간 제외 - 임용전 정규교사 경력, 타시도교환, 파견, 경력이 인정되는 휴직(육아, 병역 등) 포함
7	**근무성적**	• 최근 연도 근무성적(2025)가 상위인 자 - 2025 근무성적 미평정자는 최근 연도 활용 - 동점인 경우 최근부터 역순 적용
8	**생년월일**	• 생년월일이 빠른 자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내신자는 별거기간 미인정** - **[미적용] 2, 3, 4 기준**

4 전출 제한 조건

○ 신규임용 또는 타시·도 전입 후 경기도 공립학교 근속경력 3년 미만인 자와 임용당시 일정기간 타시·도 전출불가 적용 대상자(단, 이전공공기관 직원 배우자 제외)

○ 파견, 휴직 등으로 전출일 이전에 복귀 또는 복직이 불가능한 자

○ 현 직위에서 상위자격(교장, 교감자격) 소지자 및 상위자격(교장,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된 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예정자(수사개시통보, 형사소송 계류, 직위해제 등),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027년 명예퇴직 신청(예정)자, 초빙교사로 임용된 자, 수석교사 신청(예정)자, 파견예정자, 대학원 파견 및 유학휴직 등으로 복귀 후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전출 희망자 제출서류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2">제출 서류</th><th>비고</th></tr>
<tr><td rowspan="4">전출
순위별</td><td>1
순위</td><td>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자,
상이 1급~3급
국가유공자 부양자</td><td>○ 주민등록등본(본인 및 부양대상자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양대상자와의 관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부양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부양대상자)</td><td></td></tr>
<tr><td>2
순위</td><td>독립유공자 유족(가족),
국가유공자 유족(가족)</td><td>○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재직(경력)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와의 관계)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확인대상자'란이 본인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함</td><td></td></tr>
<tr><td>3
순위</td><td>부부 별거자</td><td>○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와의 관계)
○ 주민등록초본(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배우자의 재직(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td><td></td></tr>
<tr><td>4
순위</td><td>직계존속
별거자(부양)</td><td>○ 본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 배우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본인과 배우자와의 관계)</td><td></td></tr>
<tr><td rowspan="5">기타</td><td colspan="2">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td><td>○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재직(경력)증명서
○ 기관 이전(예정) 확인 증명서
- 이전기관 주소 명시</td><td></td></tr>
<tr><td colspan="2">세 자녀 이상 부양자</td><td>○ 가족관계증명서
- 18세 이하의 자녀 1명 이상 포함
(2008.3.2.이후 출생)</td><td></td></tr>
<tr><td colspan="2">부부동시 내신자</td><td>○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td><td></td></tr>
<tr><td colspan="2">임용전 인정경력이 있는 자</td><td>○ 경력증명서</td><td>정규교사경력</td></tr>
<tr><td colspan="2">휴직(파견) 중인 자</td><td>○ 복직(귀)원 제출 후 신청</td><td>인사편람
양식</td></tr>
<tr><td>유의
사항</td><td colspan="4">※ [모든 서류] 발급일자는 도교육청 공문 시행일 이후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초)본] '과거의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 또는 '모두 발급'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요건에 따른 내용 확인 가능해야 함
(부양대상자와의 관계, 부부관계, 세자녀 등)
※ [이전 공공기관] 공공기관별 이전현황에 명시된 공공기관과 이전 예정 공공기관에 한함</td></tr>
</table>

2 타시·도 전입

1 원칙

○ 각 시·도 교육청의 전출 기준에 의한 순위에 따라 전입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전입 제한조건

○ 현 직위에서 상위자격(교장, 교감자격) 소지자 및 상위자격(교장, 교감자격) 연수 대상자로 지명된 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예정자(수사개시통보, 형사소송 계류, 직위해제 등),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4대 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자(단, 사면자는 제외)

○ 성비위로 인한 학급담당교원 배제자

○ 파견, 휴직으로 전입일 이전에 복직 또는 복귀가 불가능 한 자

○ 특정 지역(시.군)으로의 조건부 전입 요청 자

○ 2027 명예퇴직 신청자(예정자) 등 기타 전입 부적격으로 판단된 자

3 전입자의 시.군 배정

○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제11조 6항 5호에 따라 배치

○ 타시·도 전입자 순위명부는 교육총경력이 많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작성

《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제11조 6항 5호》

⑥ 교(원)감, 교사의 시·군간 전보는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사의 시·군 배정은 다음 순서에 의한다.

가. <삭제>

나. 시·군간 일반전보자(갑만기 포함)

다. <삭제>

라. 타시·도 전입자

마. <삭제>

Ⅳ 시 · 도간 교환(파견) 근무

1 대상

○ 2027.2.28.기준 경기도 공립학교 **실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기도 교육청 소속 공립 유·초등교원(유치원, 특수,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포함)으로 타시·도 교육청으로 교환(파견)근무를 희망하는 자

2 원칙

○ 범위 : 경기도교육청과 타시·도 교육청 간 교환 근무

○ **동수교류** : 파견기간, 직위, 직급, 희망인원 등 상호교류 조건이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1대1 동수 교류

○ **1개 시·도만 희망 가능**

○ **전출과 교환(파견) 중복 내신 불가** ※「2018.3.1.자 시·도간 교류 추진계획」에 예고

○ **파견기간: 2년(연장근무 없음)** ※ 2017.10.12.행정예고

《파견기간 2년 행정예고 내용》

○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20880(2017.10.12.)
「2018.3.1.자 공립 초등학교 교원 시도간 교류 희망자 인사자료 제출」
"행정예고: 2020.3.1.자부터 경기도는 교환(파견) 2년만 받습니다."

○ 전남의 경우, 희망 시·도로 순위명부 작성 후 선순위자부터 시군 희망
예시) 경기 ➡ 전남 교환(파견) 순위 확정 후, 선순위자부터 경기 ➡ '목포' 등 교환(파견) 가능한 시·군 희망 여부 확인

○ 교환(파견) 근무 시 취득한 가산점은 인정하지 않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평정업무 처리 요령'에 따름)

3 시·도간 교환(파견) 근무자 선정 기준

1) 선정 순위

순 위	교환 대상	교환 요건
1순위	지역특성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려는 자	• 희망 시·도의 지역특성 관련 연구수행자로 교육감이 승인한 자
2순위	노부모 봉양이 필요한 자	• 희망 시·도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70세(1957.3.1.이전 출생)**이상 노부모가 거주하고 있고 본인이 실질적 부양자로 인정되는 자
3순위	별거부부 (서울제외)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배우자가 희망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배우자가 희망 시·도에 재직 중인 자
4순위	기타 희망자	• 1, 2, 3 순위를 제외한 일반 희망자
기타	※ 위 순위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해당자는 우선 교환할 수 있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배우자를 부양하는 실질적 부양책임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을 부양하는 실질적 부양책임자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부양하는 실질적 부양책임자 (즉, 부양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교환(파견)을 희망하는 시·도에 거주)	

2) 동 순위 내 우선기준 :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순	교환 대상	교환(파견) 요건
1	세 자녀 이상 부양자	• 세 자녀 이상을 둔 자로서, **18세 이하(2008.3.2.이후 출생)**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자
2	별거기간이 오래된 자	• 부부 별거기간이 오래된 자 (3순위 신청자에 한함)
3	별거부부 교육공무원	• 별거부부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사립교원 포함)** (배우자가 전출 희망 시·도에 거주하고 있거나 재직 중인 경우)
4	별거부부 공무원	• 별거부부 공무원 (배우자가 전출 희망 시·도에 거주하고 있거나 재직 중인 경우)
5	본도 장기 실근무자	• 경기도 공립학교 근무 경력이 많은 자 - 임용전경력, 휴직기간, 타시도교환, 파견 등 학교외 근무 경력 제외
6	교육총경력	• 교육총경력(정규교원 근무경력)이 많은 자 - 계약제, 임용전 군경력, 휴직기간 제외 - 임용전 정규교사 경력, 타시도교환, 파견, 경력이 인정되는 휴직(육아, 병역 등) 포함
7	근무성적	• 최근연도 근무성적(2025)가 상위인 자 - 2025 근무성적 미평정자는 최근연도 활용 - 동점인 경우 최근부터 역순 적용
8	생년월일	• 생년월일이 빠른 자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내신자는 별거기간 미인정** - [미적용] 2, 3, 4 기준

4 교환(파견) 근무 배제 조건

1) 교환(파견) 근무 전출자

○ 신규임용 또는 타시·도 전입 후 경기도 공립학교 근속경력 1년 미만인 자

○ 파견, 휴직 등으로 전출일 이전에 복직 또는 복귀가 불가능한 자

○ 현 직위에서 상위자격(교장, 교감자격) 소지자 및 상위자격(교장,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된 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예정자(수사개시통보, 형사소송계류, 직위해제 등),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027년 명예퇴직 신청(예정)자, 초빙교사로 임용된 자, 수석교사 신청(예정)자

○ 교환(파견) 근무 기간 중 장기 휴직 또는 퇴직이 예상되는 자

2) 교환(파견) 근무 전입자

○ 현 직위에서 상위자격(교장, 교감자격) 소지자 및 상위자격(교장,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된 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예정자(수사개시통보, 형사소송계류, 직위해제 등),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성비위로 인한 학급담당교원 배제자

○ 4대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단, 사면자는 제외)

○ 파견, 휴직 등으로 전입일 이전에 복직 또는 복귀가 불가능한 자

○ 특정 지역(시.군)으로의 조건부 교환(파견)근무 요청 자

○ 교환(파견) 근무 기간 중에 휴직 또는 퇴직이 예상되는 자

○ 2027 명예퇴직 신청자(예정자) 등 기타 전입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자

5 교환(파견) 근무자의 복귀

○ 교환(파견)기간 만료 후 복귀 시에는 원적교로 복귀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적교 소속 교육지원청의 타교로 배치할 수 있음

6 교환(파견) 전입자의 배치

○ 경기도 시.군 전보자의 배치를 고려하여 **가급적** 생활근거지 배정

7 교환(파견) 희망자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순위별	1	지역특성 관련 연구 수행자	○ 연구계획서 ○ 교육감 승인서 사본	
	2	노부모 봉양이 필요한 자	○ 주민등록등본(본인) ○ 주민등록등본(부양대상자) **- 70세(1957.3.1.이전 출생)이상의** 노부모 ○ 가족관계증명서(부양대상자와의 관계)	
	3	부부별거자	○ 주민등록초본(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재직(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기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부양자		○ 주민등록등본(본인 및 부양대상자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양대상자와의 관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부양대상자)	
	임용전 인정경력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	정규교사경력
	휴직 중인 자		○ 복직원 제출 후 신청	인사편람 양식
유의사항	※ **[모든 서류] 발급일자는 도교육청 공문 시행일 이후**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초)본] '과거의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 또는 '모두 발급'**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요건에 따른 내용 확인 가능해야 함 (부양대상자와의 관계, 부부관계, 세자녀 등)			

Ⅴ 행정 사항

1 추진일정

기 간	주 요 업 무 내 용	비 고
2026.10.12.(월) ~ 10.13.(화)	○ G-인사이트 시·도간 교류 개요설정(교육지원청, 학교)	교육지원청, 학교 인사업무담당자
2026.10.14.(수) ~10.20.(화)	○ G-인사이트 시·도간 교류 희망자 신청 접수	학교 ⇒ 교육지원청
2026.10.21.(수) ~10.23.(금)	○ (교육지원청) 접수 서류 검토수정 후 도교육청 제출	교 육 지 원 청 ⇒ 도교육청
2026.10.23.(금) ~11.4.(수)	○ (도교육청) 접수서류 검토 및 수정 요청	도교육청
2026.11.9.(월) ~11.13.(금)	○ 시·도간 교류 희망자 인원 현황 공개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G-인사이트	도교육청
2026.11.16.(월) ~11.18.(수)	○ G-인사이트 시·도간 교류 희망자 개인별 순위 확인 ※ 잠정 순위이며 변경될 수 있음	도교육청
2026.12.14.(월) ~12.24.(목)	○ 시·도간 교류 전출 희망자에 대한 동의 요구 및 회신	해당 시·도 교육청간
2026.12.29.(화)	○ 시·도간 교류 전·출입자 확정 및 통지 ※ 교육지원청 확정 알림 공문 통지	도교육청
2027.1.4.(월) ~1.8.(금)	○ 시·도간 교류 전·출입자 임지희망서 제출	해당 시·도 교육청간
2027.2.	○ 인사교류 대상자 인사발령 알림	도교육청

※ 상기 일정은 업무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순위는 2027.2. 인사발표 전까지 안내하지 않음

2 기타 유의사항

○ **서류 접수 마감 후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교류 희망자 인원 현황 공개(11.9.)' 이후는 포기가 불가하니 신청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 포기자 행정처분 실시 및 다음 신청 시 후순위 부여

○ 모든 서류의 **발급일자는 도교육청 공문 시행일 이후**이어야 함

- 서류 접수 마감일 이후 기간에 예정된 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함 (공식 문서가 증빙자료로 제출된 경우에 한해 인정)

○ **교환(파견)근무 기간이 만료되어 복귀하는 경우** 타시·도 전출내신은 가능하나 **연이어 타시·도 교환(파견) 신청은 불가**

○ 1회 이상의 교환(파견) 근무자 및 2023.3.1.자 이후 조기복귀자는 최초 교환(파견) 내신자의 후순위(5순위)로 배정

○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의 경우 초·중등 자격 구분이 없으므로 교류 희망한 시·도교육청에 전입될 경우 초·중등·특수학교 구분 없이 배치될 수 있음 (근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인사과-2102, 2007.11.29.)

○ 반드시 관련 서류와 대조 후 본인 검증 과정을 거쳐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있거나 부양(봉양)을 위한 시·도간 교류 교원이 실제 부양하지 않을 경우, 발령 후에라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경기도 전출 배제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희망 시·도의 배제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의 처리되어 교류가 불가할 수 있음**

※ 시도별 제한 조건은 해당 시·도의 계획서를 통해 개인별 사전 확인이 원칙

○ 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 변경이나 대상자 추천 및 확정 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 할 수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름

Ⅵ 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시·도간 교류 서류작성 기본 사항

가. 경력(기간) 산정

- **경력 산정 기준일 : 2027.2.28.**
- 경력 기간 : 월수까지 계상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절사함
  ※ 단, 별거기간은 일수까지 계산함
- 경력 산정 : 학교별 총 근무 경력 중 미인정 기간 제외
  ※ 인정 기간을 임의로 나눠 계산하지 않음

나. 경력 인정범위

- **경기도 근속경력** : 전출대상 조건 3년 산정 시 활용
  - 제외경력: 임용전경력(계약제, 군경력, 사립학교), 휴직기간, 타시도교환 경력
  - 인정경력: 육아휴직
- **본도 실근무경력** : 교환대상 조건 1년 및 동 순위내 우선 기준 선정 시 활용
  - 제외경력: 임용전경력(계약제, 군경력, 사립학교), 휴직기간, 타시도교환 경력, 파견 등 학교외 근무 경력
- **교육총경력** : 동 순위내 우선 기준 선정 시 활용
  - 제외경력: 계약제, 임용전 군경력, 휴직기간
  - 인정경력: 임용전 정규교사 경력(사립학교 포함), 타시도교환 경력, 파견,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거 경력이 인정되는 휴직(육아, 병역 등)

다. 별거기간 인정범위

- 혼인신고(전입)일(최초임용일이 혼인신고(전입)일 이후인 경우는 최초임용일)부터 경력 기준일(2027.2.28.)까지의 기간 중 전출(교환)을 희망한 시·도에 배우자(직계존속)가 거주 또는 재직한 기간
- 모든 휴직, 파견 기간 제외
- **희망 시·도 마지막 전입시점부터 기간 산정**

예) 부산 전출 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주소지가 부산→경남→부산으로 변경되었다면 최근 부산에 거주한 기간만 별거기간으로 인정함

《 별거기간 계산 오류 사례 》

○ 별거시점 착오 및 휴직, 타시도(교환)파견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 오류 발생

- **별거시점** : 혼인신고일(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직장 옮긴 날(재직/경력증명서), 발령일, 경기도 전입일(주민등록기록) 등
- **별거기간 입력 사례**

① 2010.4.29. ~ 2012.2.29.(결혼 후 별거) 별거기간 인정(01.10.01)
② 2012.3.1. ~ 2013.2.28.(휴직) **별거기간 제외**
③ 2013.3.1. ~ 2015.2.28.(타시도 교환 근무) **별거기간 제외**
④ 2015.3.1. ~ 2020.2.29.(복귀 후 별거) 별거기간 인정(05.00.00)

※ **도교육청 서류제출 마감일 이후 별거 대상자가 전출, 교환(파견) 희망 지역으로 주소 이전한 경우는 별거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증빙자료 미제출자

- 일반희망자로 간주하며 우선순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
- 서류 점검 시 보충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 시에도 일반희망자로 처리될 수 있음

2 제출자료 및 방법

가. 전출 및 교환(파견) 근무 희망자

구분	제출 서류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방법
학교	타시·도 교류 신청서 및 증빙 서류	10. 20.(화)	학교 →교육지원청	G-인사이트
교육지원청	검토 완료한 타시·도 교류 신청서 및 증빙 서류	10. 23.(금)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나. 교환(파견) 근무 기간 만료자

구분	제출 서류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방법
학교	[서식1] 교환(파견) 복귀자 명부 - 경기도로 복귀 오는 자 - 타·시도로 복귀 가는 자 [서식2] 교환(파견) 근무 복귀 신청서	10. 20.(화)	학교 →교육지원청	K-에듀파인
교육지원청	[붙임2] 교환(파견) 복귀자 명부	10. 23.(금)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Q&A 질의 응답 사례

질의 1

■ 신규교사 이외에 경력교사는 현임교 경력이 2년 미만이면 관내·외 전보를 할 수 없는데, 타시·도 전출도 할 수 없나요?

▶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육아휴직 기간 포함)하였다면 현임교 2년 미만이어도 타시·도 전출 내신이 가능합니다.

질의 2

■ 저는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치매에 걸린 모친을 모시고 있고 아들은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로 인정이 안되는군요. 경기도에 근무하는 아내가 서울시로 타시·도 전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부양대상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1순위 장애인 부양자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별거자이지만 서울은 별거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희망순위로 전출내신이 가능합니다.

질의 3

■ 남편 직장과 주소지가 광주인데 전남으로 타시·도 전출 및 교환(파견)이 가능한가요?

▶ 일반 희망자로 내신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지역으로 희망하는 경우에만 부부별거자 순위 인정이 가능합니다.

질의 4

■ 현재 육아 휴직 중인데 갑자기 남편이 직장을 2026년 9월에 제주도로 옮겼습니다. 제주도로 타시·도 전출 및 교환(파견)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휴직 중인 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3월 1일자로 복직이 확실시 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복직원 제출 후 내신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내신서 제출 후 중도 포기하면 안 되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5

■ 남편 직장이 대구에 있고 실제 거주도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아직 경기도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로 타시·도 전출할 경우 부부별거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부부별거 인정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전출 희망 시도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 부부별거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재직(경력)증명서에 전출희망 시도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질의 6

■ 경기도에서 8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다시 임용 고시를 봐서 2024.4.1.자로 경기도 신규발령을 받았습니다. 노부모 봉양을 위해 2027.3.1.자로 전남에 전출을 하고자하는데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경력이 중단되었기에 선생님은 경기도 경력이 2024년 4월 1일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신규임용 후 3년 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 7

■ 현재 인천으로 교환(파견)근무 중인데 2027.2.28.자 만료예정입니다. 이번에 복귀하면서 다시 인천으로 교환(파견)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교환(파견) 복귀와 동시에 교환(파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단, 교환(파견) 복귀와 동시에 타시·도 전출은 신청 가능합니다.(단, 경기도 근속경력 3년 이상일 경우 가능)

질의 8

■ 2025년 3월에 부산에서 경기도로 전입해 왔는데 남편이 예기치 못하게 부산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2027년 3월에 다시 부산으로 내신 낼 수 있나요?

▶ 전출은 3년 미만 근무로 불가능하지만, 교환(파견) 내신은 가능합니다.

질의 9

■ 경북에서 근무하는 제 친구가 경기도로 타시·도 전입을 원하는데 저와 맞바꿀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타시·도 교류는 개인별로 맞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신을 받아 순위명부에 의해 1:1로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질의 10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경력, 경기도 실근무경력, 교육총경력에 포함되나요?

▶ 육아휴직 전 기간은 자녀 구분 없이 교육총경력에 포함되나, 실제로 근무한 경력이 아니므로 경기도 실근무경력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별거기간에도 불포함).
(단, 전출대상기준(3년이상) 설정을 위한 근속경력에는 육아휴직 기간 포함)

질의 11

■ 세종과 충남 동시 전출 내신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세종과 충남 중 1개 시·도에만 전출 내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2

■ 타시·도 전출자의 NEIS 이관은 어떻게 하나요?

▶ 도교육청에서 직접 이관하므로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이관 처리하지 않습니다.
▶ 전출자로 확정된 교원들의 나이스 사용은 시도별 협의에 의해 2027년 2월 28일 16시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전출된 기관으로 이관되어 사용이 불가합니다. 사용은 2027년 3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3

■ 타시·도 교환(파견) 근무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 원적교에서 평정합니다. 원적교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다고 제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교환(파견) 복귀자 명부**

시·도간 교환(파견) 종료 후 경기도로 복귀 오는자 명단

연번	시군	학교명	성명	직위	소지 자격	성별	주민 번호	파견 시도	파견학교명	타시·도 교환 기간	비고

※ 작성 요령

○ 2027.3.1.자 시·도간 교환(파견) 기간 만료 후 경기도로 복귀하는 대상자 모두 기록

○ 교환(파견)근무 복귀 신청서와 함께 제출

시·도간 교환(파견) 종료 후 타시·도로 복귀 가는자 명단

연번	시군	학교명	성명	직위	소지 자격	성별	주민 번호	원적 시도	타시·도 교환 기간	비고

※ 작성 요령

○ 2027.3.1.자 시·도간 교환(파견) 기간 만료 후 타시·도로 복귀하는 대상자 모두 기록 (복귀 신청서 미제출)

서식 2 **교환(파견) 근무 기간 만료 복귀 신청서**

교환(파견) 근무 복귀 신청서

본인은 2025년 03월 01일부터 2027년 02월 28까지 (2)년간 (00)교육청 (○○)초등학교에서 교환(파견) 근무하였으나 교환(파견) 기간이 만료되어 2027년 03월 01일자로 복귀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00.

○○ 초등학교

교사 (인)

경 기 도 교 육 감 귀하

참고 1 최근 3년간 타시도 전출 및 전입자 배치 현황 (초등교사)

1 타시도 전출

년도	희망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2024. 3.1.자	희망자수	79	7	6	12	21	19	3	4	3	2	6	5	2	8	6	7	190
	전출	5	7	6	12	4	16	3	4	3	2	6	5	2	8	3	1	87
2025. 3.1.자	희망자수	66	7	11	7	21	17	1	4	1	1	2	5	3	4	9	10	169
	전출	7	6	11	7	3	11	1	4	1	1	2	5	3	4	5	2	73
2026. 3.1.자	희망자수	71	6	6	10	18	17	1	2	3	2	2	5	2	3	6	13	167
	전출	2	6	6	10	5	15	1	1	3	2	2	5	2	2	6	3	71

2 타시도 교환(파견)

년도	희망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2024. 3.1.자	희망자수 (2년)	81	5	6	0	5	7	0	11	3	8	1	2	3	8	3	3	146
	교환 (2년)	52	5	4	0	1	1	0	10	3	8	1	2	3	2	1	1	94
2025. 3.1.자	희망자수 (2년)	90	4	8	2	3	1	2	8	4	8	5	4	3	5	2	0	149
	교환 (2년)	56	4	7	2	2	1	1	8	4	8	1	2	3	5	0	0	104
2026. 3.1.자	희망자수 (2년)	94	5	15	3	7	7	3	6	6	9	3	2	7	2	4	3	176
	교환 (2년)	51	5	5	1	3	6	1	6	6	9	1	1	4	2	1	1	103

참고 2 최근 3년간 타시도 전출 및 전입자 배치 현황 (유치원교사)

1 타시도 전출

년도	희망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2024. 3.1.자	희망자수	13	0	3	8	1	3	0	2	0	1	0	0	0	1	0	5	37
	전출	0	0	0	4	0	1	0	2	0	1	0	0	0	1	0	0	9
2025. 3.1.자	희망자수	24	1	12	3	0	2	0	0	1	1	0	0	0	0	0	6	50
	전출	0	1	2	1	0	2	0	0	1	1	0	0	0	0	0	0	8
2026. 3.1.자	희망자수	16	2	3	13	0	3	0	0	0	2	0	0	0	1	0	6	46
	전출	0	2	0	0	0	1	0	0	0	2	0	0	0	1	0	1	7

2 타시도 교환(파견)

년도	희망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2024. 3.1.자	희망자수	2	0	1	0	0	0	0	1	0	0	0	0	0	0	0	0	4
	전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25. 3.1.자	희망자수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전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26. 3.1.자	희망자수	1	2	0	1	0	0	0	0	0	1	1	0	0	0	0	0	6
	전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참고 3 최근 3년간 타시도 전출 및 전입자 배치 현황 (유아특수)

1 타시도 전출

년도	희망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2024. 3.1.자	희망자수	4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5
	전출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2025. 3.1.자	희망자수	3	0	1	0	0	0	0	0	0	0	1	0	0	0	0	0	5
	전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26. 3.1.자	희망자수	3	0	1	0	0	1	1	0	0	0	1	0	0	1	0	1	9
	전출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2

2 타시도 교환(파견)

년도	희망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2024. 3.1.자	희망자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25. 3.1.자	희망자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26. 3.1.자	희망자수	0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2
	전출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참고 4 최근 3년간 타시도 전출 및 전입자 배치 현황 (초등특수)

1 타시도 전출

년도	희망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2024. 3.1.자	희망자수	8	0	1	0	1	2	0	0	0	0	0	0	1	1	2	0	16
	전출	0	0	0	0	1	1	0	0	0	0	0	0	1	1	2	0	6
2025. 3.1.자	희망자수	7	2	1	1	1	1	1	1	0	0	0	1	2	0	0	0	18
	전출	1	2	1	1	0	0	1	1	0	0	0	0	0	0	0	0	7
2026. 3.1.자	희망자수	10	0	0	0	0	1	1	0	1	0	1	0	1	0	0	1	16
	전출	1	0	0	0	0	0	1	0	1	0	1	0	1	0	0	1	6

2 타시도 교환(파견)

년도	희망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2024. 3.1.자	희망자수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전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25. 3.1.자	희망자수	0	0	1	0	0	0	0	1	0	0	1	0	0	0	1	0	4
	전출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2026. 3.1.자	희망자수	0	0	2	0	0	0	0	1	1	0	0	0	0	1	2	0	7
	전출	0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2